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3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박대출·권영세·이종배

송석준・이종욱・강승규

김태호 · 김상훈 · 정연욱

박충권 · 최은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한편(안 제10조제1항, 안 제24조제1항),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주요내용

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안 제10조제1항)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10%p씩 상향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년 연장함.

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 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8조의9)

1주택자인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중견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5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가목1) 및 2) 외의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과세연도에"를 각각 "과세연도부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로 한다.

제9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9(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1주택을 양도할 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 1.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할 것
-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3.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1세대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과 세액 공제 계산방법,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10 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8조의9의 개정규정 중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② 제98조의9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	
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	
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 인력	
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	
만을 적용한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3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	
구 · 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	
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 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 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신설>

가
<u>다만, 2024년 12월</u>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
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

나.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 저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 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 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 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 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 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 한다.

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 00분의 50, 중소기업의 경 우에는 100분의 60)에 상 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u>과세연도부터</u>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
세연도에
<u>.</u>

- 1. · 2. (생략)
-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자.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 월 31일이 속하는 <u>과세연</u> 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 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 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2) (생 략)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 월 31일이 속하는 <u>과세연</u> 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 ⑤ (생 략) <신 설>

1.·2. (현행과 같음)
3
가
<u>과세연도</u>
부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
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1) • 2) (현행과 같음)
나
과세연도
<u>과세연도</u> 부터 2024년 12월 31일이
부터 2024년 12월 31일이
부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

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1주택을 양도할 때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 1항제3호를 적용한다.

- 1.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할 것
-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것
- 3.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u>것</u>
- ②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1세대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자로 본다.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계산방법,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